

#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I〉

## —美國 등 先行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

### 1. 提案制度의 創始

提案制度로 통하는 被傭者의 發明에 관하여 褒賞金(award)制度를 처음으로 採擇한 것은 英國人인 윌리엄·데니(William Denny)이다.

그 目的은 褒賞金을 중으로써 經營管理에 不可缺의 人間關係를 釀成하고 勞使協助를 促進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 당시 英國은 產業革命이 成熟하여 労使間의 賃金紛爭이 한창이었으므로 이러한 涼中에서 脫皮하고 生產性을 提高하고자 궁리한 끝에 윌리엄은 1880년에 스코틀랜드의 던버어튼에 있는 자기의 造船所에 建議函을 設置한 후 從業員들의 아이디어를 創出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建議函을 설치하기에 앞서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建議 즉 提案에 따른 아이디어와 포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關係委員會의 構成을 발표했다.

### 2. 美國制度의 沿革과 概要

英國에서 시작한 提案制度는 그 해에 美國의 예일·엔드·타운製造會社(Yale & Towne Manufacturing Co.)가 導入하였다. 여기에서는 價值 있는 發明에 대해서 賞與制度를 실시하여 採擇된 발명은 회사에서 讓受하는 權利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888년에는 14개의 제안이 채택되고 賞與金으로 600달러가 支給되었다.

1881년에는 美海軍의 沿岸警備隊에서 이 제도를 채용했고, 1884년에는 내쇼날·캐시·레지스터商社(National Cash Register Co.)가 이 제도를 採用하자 이어서 각 企業이 앞을 다투어 도입하여 마침내는 被傭者の 提案制度로 發展한 것이다.

1912년 7월 17일에 美國議會는 兵器廠의 피용자들에게 定期的으로 現金에 의한 特別賞與制度가 許與되었다. 그 規定은 「兵器廠의 一部施設에 종사하는 직원이 製造工程 또는 製造設備의 改善이나 經費節減에 관하여 내놓은 提案에 대해서 現金褒賞을 陸軍長官이 認定하는 法律」이다.

그 후 1954년 9월 1일 合衆國 政府職員褒賞法으로 統合改正되어 生산에 대한 資材의 節約, 能率增進, 原價의 低減, 良品質의 創出등에 관한 현금에 의한 特別賞與를 주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프트맨商社에서 현금상여제도를 채택하여 民間企業에 퍼지기 시작했다.

美國은 發明의 出願權이 獨創的이고 最初의 發明者에게만 있다는 發明者主義가 基本이 되어 있다. 그러나 被傭者 發明에 대하여는 企業內의 研究開發 또는 그 實施化가 盛行함으로서 그 발명의 權利 특히 實施權의 歸屬에 대한 문제が 발생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피용자가 勤務 중에 使用者的 負擔으로서 발명된 것은 그것이 사용자와 발명자 간에 默契 또는 明文의 承諾이 되어 있어도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請求할 수가 없으며 다만 사용자는 實施料가 不必要한 通常 實施權만을 取得할 수가 있다는 判例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발명자주의의 原則과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관계에 있어서 기업내 발명의 調和를 꾀한 것이며 이 같은 실시권은 일반적으로 Shop right라고 한다. 雇用期間중의 발명에 대한 Shop right의 性質, 範圍, 限界 등에 대하여는 그 후 오랜 時日을 두고 裁判過程에서 論爭의 焦點이 되었다.

1869년 피용자발명에 대하여重大한契機가 되는判決이 있었는데 이는羊毛工業에서劃期的인 발명을 갖고다툰 것이다. 이事件은 사용자가 피용자의技能 및機械的熟練의發揮를 통해서 피용자에게 어느着想의 실시를委託했을 경우에는特許는 사용자에게귀속된다고支持한 것이特徵이다.

20世紀에 들어서는提案制度가脚光을 받았으며 2次大戰初期 戰爭에 필요한彈藥이나軍需品의生產量을急增시키는戰時生產手段으로서 활용하기도 했다. 이때는軍需省의直接指導아래 제안제도가 實施, 奬勵됨으로써 급속히 발전되었다.

1942년에는全美提案制度協議會가結成되어 시카고에서 1次會議가 열렸다. 민간기업에서 피용자발명의 취급이 활발해지자先發明者主義에問題點이提起되었고, 政府는戰爭遂行에對應하는 발명장려의緊急性에따라國家的科學的能力을動員하는法律案이國會에提出된지 3년후인 1945년에도結論이나지않은채終戰을 맞았다.

그러나정부는特許論爭이지루해지자 1943년 2월 5일자로 당시 루스벨트大統領은法務長官에指示하여政府研究活動,政府關係被傭者 및受託者가발명한 권리의귀속, 그리고 피용자에의報酬의管理組織에관한政府特許實務의綜合研究計劃을짜게했다.

그후各省間이나同一省內에서발명의취급에蹉跌이있음이발전되어 1947년에法務長官은당시의트루먼大統領에게「特許의運用과政策研究(Investigation of Patent Practices and Policies)」라는主題의報告書를제출하였다. 全 3卷 982面의 이보고서는피용자와契約者에관한정부특허및發明政策으로나뉘어 있다.

이보고서를바탕으로 1950년 1월 23일에트루먼大統領은「國家公務員의發明에관한政府의統一的方針 및 그施行」을定하는命令 10,096號를公布하고 이에依據하여國家公務員發明特許審查會(The Government Patent Board)가設置되었다.

#### ① 美法務長官의報告書要旨(1947年)

루스벨트大統領의 지시에따라그후트루

먼大統領에게보고된法務部長官의「特許의運用과政策研究」에서 다음과 같은施政策策을勸告하고 있다.

- 가) 政府는 정부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이 아래와 같은 狀況에서 나왔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取得한다.
  - ㄱ) 군무시간 중에 발명된 경우
  - ㄴ) 그施設, 設備, 資材, 情報, 時間 등 정부에 의하여 實質的인 지원을 받아 그 발명이 이루어 졌을 때,
  - ㄷ) 그 발명이 이루어짐에 있어 정부직원의 公的職務에 직접관계가 있을 때
- 나) 이외의 경우로는 정부의 원조를 받고 또는 발명과 직원의 公的職務 사이에 어떠하건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나 그機關의 결정에 의거하여 정부의特許行政官의承認下에 발명의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妥當하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발명의 所有權은 정부에 대한非獨占的, 取消不能, 實施料不要의 實施權이一定期間 동안公共에 필요하게끔 하는데 대해 피용자 또는 그의讓受人側에賦課된義務를條件으로 피용자에게留保된다.
- 다) 그외의 경우 피용자는 모든 것을現行法令에대해 발명의全權利를保持할 수가 있다.

이같은 보고서는 實質적으로農務省(The Department of Agriculture)의傳統的政策과一致했다. 農務성에서는世紀가바뀌어야피용자의特許權이정부에양도되거나또는公共을위해서제공되도록하였다. 또한農務성은발명이피용자의公的義務와관계가없이그자신의시간을소비해서그의비용과설비를이용하여발명한경우에도정부에실시권을바친다는조건으로정부직원에게權利를留保하는것이許容되었다.

그후이에대한不滿이일자例外的規定을增設했으며그要旨는다음과같다.

「다만 農務성 공무원의 발명에관련되는 어떠한 종류의植物特許도 農務성의現行慣例에따라 農무장관의 승인이없이는出願해서는안된다.(계속) □ C記 □